

#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하 남 시  
【교통행정과】

#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	
번호	

제출연월일 : 2016. 5. .

제 출 자 : 하 남 시 장

## 1. 개정이유

- 가. 「건축법 시행령」 개정(2013. 5. 31. 공포·시행)으로 생활숙박시설 용도가 숙박시설로 신설됨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일반숙박 시설과 생활숙박시설로 기준을 따로 정하고,
- 나. 「건축법」 개정(2015. 5. 18. 공포·시행)으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인 도로사선 제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토지대비 과대건축물 건축이 가능하게 되어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추세로 주변 교통영향이 초래되어 기계식주차장 설치 기준을 정하며,
- 다. 「주차장법」 개정(2016. 1. 19. 공포, 2016. 7. 20. 시행)으로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주차요금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나. 주차전용건축물 건폐율 등에 관한사항(안 제14조)
- 다.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(안 제17조제2항)
- 라.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(안 별표2)
- 마. 기계식주차장 철거를 위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(안 별표 2)

## 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## 4. 신구조문대비표 : 덧붙임

## 5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- 「건축법」 제60조, 「건축법시행령」 제3조의5 「주차장법」 제12조의2, 제19조의13 「주차장법시행령」 제6조,

**6. 예산수반 사항 : 해당없음**

**7. 입법예고 결과**

가. 입법예고기간 : 2016년 2월 15일 ~ 3월 5일(20일간)

나. 의견내용 : 의견없음

**8. 부서협의 결과**

가. 성별영향분석평가서 검토결과 : 의견없음

나. 하남시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 : 원안의결

**9. 기타 참고사항 : 해당없음**

**10. 관련부서 : 경기도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**

##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단서 중 “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”를 “주차할 수 없는 경우와 공영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한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영 제3조의2 규정에 의한”을 “법 제12조의 2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1,500퍼센트이하”를 “1천 500퍼센트 이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45평방미터이상”을 “45제곱미터 이상”으로 한다.

제1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법 제19조의1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30퍼센트 범위에 해당하는 주차면수를 감면할 수 있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서명		교통행정과
입 안 자	부서장 직위·성명	교통행정과장 이 광 범
	팀장 직위·성명	교통시설팀장 임 국 남
	담당자 성명·전화번호	임 국 남 (790-5480)

[별표 2]

## 부설주차장설치기준 (제17조제1항 관련)

시 설 물	설 치 기 준
1. 위락시설	시설면적 70㎡당 1대 [시설면적 / 70㎡]
2. 문화 및 집회시설(관람장은 제외한다), 종교 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, 의료시설(정신병원·요양소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), 운동시설(골프장·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), 업무시설(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),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	시설면적 100㎡당 1대 [시설면적 / 100㎡]
3. 제1종 근린생활시설(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), 제2종 근린생활시설, 숙박시설	시설면적 134㎡당 1대 [시설면적 / 134㎡] <u>다만,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은 시설면적 100㎡당 1대로 한다.</u>
4. 단독주택(다가구 주택을 제외한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시설면적 50㎡ 초과 134㎡ 이하 : 1대</li> <li>· 시설면적이 134㎡ 초과 : 1대에 134㎡를 초과하는 81㎡ 당 1대를 더한 대수 <math>[1 + ((\text{시설면적} - 134\text{㎡}) / 81\text{㎡})]</math></li> </ul>
5. 다가구주택, 공동주택(기숙사를 제외한다),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,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	<p>1. 「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7조제1항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,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에 따르되 세대당(가구, 호, 실) 1대에 미달하는 경우는 1대(다만,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0.7대) 이상으로 한다.</p> <p>2.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은 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0.6대(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.5대)이상 설치하여야 한다.</p>
6. 골프장, 골프연습장, 옥외수영장, 관람장	<p>골프장 1홀당 10대 [홀의 수 × 10㎡]                      골프연습장 0.7타석당 1대 [타석의 수 × 1.4]                      옥외수영장 정원 15인당 1대 [정원 / 15인]                      관람장 정원 100인당 1대 [정원 / 100인]</p>
7. 수련시설, 공장(아파트형은 제외한다), 발전시설	시설면적 250㎡당 1대 이상 [시설면적 / 250㎡]
8. 창고시설	시설면적 300㎡당 1대 이상 [시설면적 / 300㎡]
9. 기타건축물	시설면적 200㎡당 1대 이상 [시설면적 / 200㎡]

[비고]

1. 위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한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전체 주차대수의 40퍼센트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.
2. 부설주차장설치기준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 소수점 이하의 수가 0.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. (다만, 위 표 제5호의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로 본다.)



현행	개정안
<p>제17조(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)</p> <p>① 영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.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③ 삭 제</p>	<p>제17조(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<u>법 제19조의1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30퍼센트 범위에 해당하는 주차면수를 감면할 수 있다.</u></p>

# 《 관계법령 발췌서 》

## 【건축법】

제60조(건축물의 높이 제한) 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〔(街路區域):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(一團)의 지역을 말한다. 이하 같다〕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·공고할 수 있다. 다만,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<개정 2014.1.14.>

②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.14.>

③ 삭제 <2015.5.18.>

## 【건축법 시행령】

제3조의5(용도별 건축물의 종류)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.

[별표 1]

###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(제3조의5 관련)

#### 15. 숙박시설

##### 가.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

나. 관광숙박시설(관광호텔, 수상관광호텔, 한국전통호텔, 가족호텔, 호스텔, 소형호텔,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)

다. 다중생활시설(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 다)라.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

## 【주차장법】

제12조의2(다른 법률과의 관계)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, 용적률,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하여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, 「건축법」 제57조 및 제6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

1. 건폐율: 100분의 90 이하
2. 용적률: 1천500퍼센트 이하
3. 대지면적의 최소한도: 45제곱미터 이상
4. 높이 제한: 다음 각 목의 배율 이하

가.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: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(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

나.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: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/도로의 너비(미터를 단위로한다)배. 다만, 배율이 1.8배 미만인 경우에는 1.8배로 한다.

제19조의13(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)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철거할 수 있다.

1.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(老朽)·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(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날부터 5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)
2.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

②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

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,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.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여야 한다.

④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 또는 자치구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. <신설 2016.1.19.>

[전문개정 2010.3.22.]

[시행일 : 2016.7.20.] 제19조의13

## 【주차장법 시행령】

제6조(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)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(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4.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, 주차장 이용 실태,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

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.